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970호
2. 제 안 자 : 이영실 의원 외 29명
3. 제안일자 : 2020년 10월 16일
4.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0.6.4. 공포 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서울시의회에 결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출자·출연기관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 제22조의2)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출자·출연기관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 제출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출자·출연기관 재정운영의 특별성과 주민대표기관의 견제·감사권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 서울시(이하 “시”)는 현재 20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1] 서울의료원과 세종문화회관 등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로부터의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 2020년 10월말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은 6,096명이며,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1,684억원이고 이 가운데 시의 출연금은 5,977억 6천만원임.

○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출연금이 출자·출연기관에 매년 투입되면서

---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시 산하 5개 투자기관(서울교통공사 ,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외.

시의 재정운영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분야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다. 결산서 제출기한 강화 (안 제22조의2제2항)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출자·출연기관이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이는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을 비롯하여 재정 전반에 대해 시의회의 감독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였음.

○ 개정안은 「지방출자출연법」의 개정·시행(2020.6.4.) 으로 결산 완료 시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임.

<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사항 >

종 전	현 행(2020.6.4.)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생략)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일부 출자출연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도 개별 법률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별 결산서 근거법령 >

구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②	「지방공기업법」 제35조②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①
작성주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관리자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장
결산서	제출: 2월말	작성: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이내	제출: 사업연도 종료 2개월 내	제출: 2월말
피제출자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 준정부기관: 주무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 제출시점을 공공기관 등의 결산서 제출기한인 2월말로 일치시킴으로써 신속 원활한 결산사무의 진행과 함께 출자·출연기관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의회의 민주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입법 효과가 있음.

○ 다만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결산완료시점을 2월말로 정하고 이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법에서 정한 결산완료시점과 결산서 작성 및 제출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2월말로 일괄 앞당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 수정 의견 >

현 행	수정 의견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① (생 략)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2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 ③ (현행과 같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용우	02-2180-8062

[참고자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2020.10.31일 현재)

구 분		의 료 원	연 구 원	산 업 진 흥 원	신 용 보 증 재 단	세 종 문 화 회 관
설립 목적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해 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질향상과 보건의료사업 발전에 기여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전문적 조사·연구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설립 근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설립일		'82. 9. 30.	'92. 7. 14.	'98. 3. 31.	'99. 6. 7.	'99. 7. 1.
대 표 자 (임기)		송관영(63년생) ('20. 6. 1.~ '23. 5. 31)	서왕진(64년생) ('20. 4. 27.~ '23. 4. 27)	장영승(63년생) ('18. 11. 1.~ '21. 10. 31)	한종관(58년생) ('18. 9. 21.~ '21. 9. 20,)	김성규(63년생) ('18. 9. 21.~ '21. 9. 20,)
조 직		4부 4실 1본부 9센터 25진료과 26팀 1연구소 2위원회	감사실 성평등인권센터 1본부 8실 2센터	2실 7본부 1단 1센터 36팀	2부문 2실 5부 2센터 / 4지역본부 26지점 6센터	3본부 1실 14팀 9예술단 (3TF)
정원내	정원	1,736명	228명	465명	455명(임원3 포함)	402명
	현원	1,479명	216명	440명	441명(임원3 포함)	327명
정원외	무기	-	-	-	-	114명
	기간제	120명	140명	11명	213명	32명
	단시간	-	4명	4명	-	-
이사	정원	13	15명	15명	8명	15명
	현원	11	11명	9명	8명	14명
감사	정원	1	2명	2명	1명	2명
	현원	1	2명	2명	1명	2명
'20 예산	본예산	1,974억원	434억원	1,925억원	1,730억원	560억원
	추경예산	2,014억원	423억원	2,729억원	3,356억원	27억원
市출연금	~'19 (누적액)	-	3,148억원	4,425억원	3,835억원	4,879억원
	'20	155억원	336억원	652억원 (본예산 585억원)	810억원	364억원
주요 사업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 의료시책의 수행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	-市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당면과제 조사연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市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및 투자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등을 통한 기업매출 증대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인재 양성 및 채용지원 -R&D지원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우수 콘텐츠기업 육성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 -서울시 주요거점별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등 산업거점 활성화	-신용보증지원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투자펀드 관리	-세종문화회관 운영 -공연 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보급 -문화예술 관계 자료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법인의 운영보존 자금의 적립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서울시 위탁사업 -기타 문화시설운영과 문화행사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구 분		여성가족재단	복 지 재 단	문 화 재 단	시립교향악단	디 자 인 재 단
설립 목적		-실질적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
설립 근거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설립일		'02. 1. 24.	'03. 12. 31.	'04. 3. 15.	'05. 6. 1.	'08. 12. 16.
대 표 자 (임기)		백 미 순 ('20.5.28~'23.5.27)	홍영준(74년생) ('18. 9. 21.~ '21. 9. 20.)	김대일(66년생) ('18. 9. 20.~ '21. 9. 19.)	강은경(70년생) ('18. 3. 1.~ '21. 2. 28.)	최경란(62년생) ('18. 4. 16.~ '21. 4. 15.)
조 직		5본부 및 1단	1전략관 · 2실, 2본부 · 1실, 3센터 · 1지원단	2실 5본부	1본부 5팀 1감사역 1예술단	4본부 1실 1관 3센터 1사무국
정원내	정원	165명	180명	226명	156명	160명
	현원	155명	177명	220명	135명	141명
정원외	무기	-	-	-	4명	-
	기간제	48명	25명	39명	6명	8명
	단시간	6명	-	-	-	-
이사	정원	21명	10명	15명	15명	15명
	현원	10명	10명	14명	8명	10명
감사	정원	2명	2명	2명	1명	2명
	현원	2명	2명	1명	1명	2명
'20 예산	본예산	181억원	452억원	847억원	246억원	628억원
	추경예산	168억원	△14억원	527억원	-	-
市출연금	~'19 (누적액)	955억원	2,841억원	3,178억원	1,690억원	2,164억원
	'20	139억원	372억원	574억원	180억원	349억원
주요 사업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연구·개발 -성인지력 향상 -여성가족 관련 문화 활동 및 복지 증진 -국내외 여성 교류 강화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 -스페이스살림의 운영 및 관리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복지 분야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지역문화의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공익목적 공연 -해외공연 -판매공연 (정기공연, 기업공연 등) -문화예술 교육사업 -음반 녹음, 발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스마트 유니버설 디자인 시티 -서울 라이프스타일 제시 -디자인 비즈니스 허브 -패션봉제산업 지원 -서울시활용플라자 운영

구 분		장 학 재 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 지 털 재 단	120다산콜재단
설립 목적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과 청소년을 지원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장년층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복리 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실현
설립 근거		-민법32조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평생교육법2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일		'09. 1. 8.	'15. 3. 12.	'16. 4. 28.	'16. 5. 25.	'17. 4. 24.
대 표 자 (임기)		이대현(64년생, 이사장 직무대행) ('20. 9. 27.~ 신임 이사장 임명시까지)	김주명(63년생) ('19. 7. 5.~ '22. 7. 4.)	김영대(60년생) ('18. 11. 1.~ '21. 10. 31.)	이원목(64년생, 이사장 직무대행) ('20. 4. 13.~ 신임 이사장 임명시까지)	김민영(67년생) ('20. 4. 24. ~ '21. 4. 23.)
조 직		1사무국 2부	2국 8팀 1센터	3본부 1센터	1실 7팀	1실 2본부 12팀
정원내	정원	13명	50명	128명	45명	420명
	현원	12명	49명	125명	41명	416명
정원외	무기	-	2명	-	-	12명
	기간제	-	8명	22명	2명	-
	단시간	-	-	-	-	-
이사	정원	11명	11명	10명	8명	10명
	현원	10명	11명	10명	7명	8명
감사	정원	2명	2명	2명	2명	1명
	현원	2명	2명	2명	2명	1명
'20예산	본예산	131억원	132억원	170억원	99억원	244억원
	추경예산	130억원	133억원	224억원	123억원	3억원
市출연금	~'19 (누적액)	1,296억원	183억원	447억원	273억원	573억원
	'20	115억원	109억원	138억원	87억원	233억원
주요 사업		-대학생 장학사업 (서울희망대학, 공익인재, 우수인재, 대학진로, 희망플러스, 서울평화희망) -고등학생 장학사업 (서울희망고교, 진로, 예체능, 하나고, 꿈길,소상공인디딤돌)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멘토링, 커뮤니티, 아카데미, 서포터즈) -기타지정기탁 장학사업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서울자유시민대학, 모두의 학교, 동네배움터,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조정 - 소외계층 평생교육	- 중장년층인생재설계및사회참여지원 - 50+일모델 개발 및 확산 - 50플러스캠퍼스사업 운영 - 50+시정을 선도하는 정책 개발 강화 - 50+세대의 사회공헌활동 문화 조성 - 50+ 신문화 확산 및 협력생태계 강화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자치구 스마트도시 컨설팅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시민참여형 공공데이터 창출 -도시데이터교육 -스마트시민랩 운영 -스마트도시 서비스 혁신지원 -소상공인 지원 협동로봇 개발 보급사업 -서울 스마트시티센터 운영	-시정·구정 상담 제공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상담 전문인력 양성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 서비스 수탁 수행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구 분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설립 목적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 운영 효율화, 질향상 지속 강화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자원·분야간 연계협력 강화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 도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시경쟁력 확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설립 근거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방송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일		'17. 7. 6.	'18. 3. 27.	'18. 4. 23.	'19. 2. 27.	'20. 2. 17.
대표자 (임기)		김창보(69년생) ('20. 2. 10.~ '23. 2. 9.)	고인석(59년생) ('18. 10. 10.~ '21. 10. 9)	이재성(59년생) ('18. 4. 23. ~ '21. 4. 22.)	주진우(64년생) ('19. 3. 11. ~ '22. 3. 10.)	이강택(62년생) ('20.2.17.~ '23.2.16.)
조 직		3부 1실	2본부 7실 3센터	2본부 15팀 2TF	2실 1본부 6팀	2실 5본부 27팀
정원내	정원	38명	100명	159명	572명	398명
	현원	37명	83명	117명	383명	352명
정원외	무기	1명	-	-	-	-
	기간제	1명	7명	93명	3명	5명
	단시간	-	-	-	-	3명
이사	정원	10명	10명	15명	10명	11명
	현원	7명	8명	9명	10명	8명
감사	정원	2명	2명	2명	2명	1명
	현원	1명	2명	1명	2명	1명
'20 예산	본예산	56억원	174억원	845억원	351억	505억원
	추경예산	-	-	△5.5억원	309억 (감추경 42억)	-
市출연금	~'19 (누적액)	99억원	176억원	373억원	72억	-
	'20	39억원	135억원	549.6억원	253억원 (1차 감추경 35억 반영)	388억원
주요 사업		- 싱크탱크로서 정책연구 및 평가 - 서울 공공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 - 예방중심 공공보건의료 구현, 지역사회 건강생태계 조성 - 예방중심 공공보건의료 구현, 지역사회 건강생태계 조성 - 보건의료 자원개발 및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스마트도시 조성·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서울특별시, 국가·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 교류협력 지원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하는 자 또는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 -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등 방송서비스 전반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해외방송국과의 국제교류 협력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 협찬 등 수익 사업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